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708
----------	------

2024년 4월 25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4월 3일, 송도호 의원 (찬성자 27명)
- 나. 회부일자 : 2024년 4월 8일
- 다. 상정일자 : 제323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24년 4월 25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송도호 의원)

가. 제안이유

- 보도상영업시설물의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은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무를 자치구에 위임하여 자치구청장으로 하여금 관리토록 하고 있으며, 운영자가 시장의 승인없이 구조변경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관리자인 자치구가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이를 보완함으로써

자치구의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 개선을 도모코자 함.

나. 주요골자

- 관리자에 대한 용어 정의를 추가로 신설함(안 제2조제7호)
- 관리자가 시장의 승인없이 구조변경 또는 훼손한 경우에도 시장은 시설물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추가함(안 제9조제2항)

3. 검토보고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 개요

-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제15조에 따라 시장이 보도상영업시설물에 관한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을 ‘관리자’로 정의하는 한편, 구청장인 관리자가 시장의 승인없이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한 경우 현행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시설물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표]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 략) <u><신 설></u> 7. (생 략) 제9조(행위의 금지) ① (생 략) ② 운영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운영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시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설물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2조(정의) ----- -----. 1. ~ 6. (현행과 같음) 7. “관리자”란 제15조에 따라 시장이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을 말한다. 8. (현행 제7호와 같음) 제9조(행위의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운영자 및 관리자는 ----- -----. 운영자 및 관리자가 ----- -----. ③ (현행과 같음)

■ 서울시 보도상영업시설물 현황

- 보도상영업시설물은 신문, 잡지, 교통카드 등을 판매하는 ‘가로판매대’와 구두를 닦고 수선하는 ‘구두수선대’ 등 시장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보도에 설치된 시설물로서 현재 서울시내에는 총 1,391개(가로판매대 558개, 구두수선대 803개)가 운영 중에 있음.

[표] 서울시 보도상 영업시설물 연도별 증감 현황 ('24.1.31.기준)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1,852	1,764	1,671	1,552	1,443	1,391
가로판매대	842	785	728	670	613	558
구두수선대	1,010	979	943	882	830	803
증감(전년대비)		△88	△93	△119	△109	△52

- 서울시는 시민 보행권 우선 원칙에 따라 허가된 시설물 이외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관리¹⁾하고 있으며 보도상 영업시설물의 점용허가 및 대부계약, 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현행 제15조²⁾에 따라 시설물이 위치한 지역의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음.
- 이에 구청장은 시설물의 운영 상태를 매월 1회 이상 점검³⁾하

1) 제12조(시설물 철거) ③ 누구든지 2001년 8월 1일(조례 제3889호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허가된 시설물 이외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허가 취소되어 철거된 시설물을 대신하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2) 제15조(사무의 위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장의 사무는 시설물이 위치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제3조, 제5조, 제6조에 따른 점용허가 및 대부계약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제8조부터 제13조에 따른 시설물 이전 · 원상회복명령 · 시정명령 · 벌점부과 및 관리 · 허가취소 · 시설물 철거 및 처분의 사전통지에 관한 사항
4. 제14조에 따른 점용료의 부과 · 징수 및 대부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 등

3) 제7조(시설물 관리) ⑤ 시장은 시설물의 운영 상태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 관계법령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운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여 전매나 전대, 시설물의 구조변경 및 훼손 등 규정위반 행위⁴⁾를 조사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원상회복 및 벌점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 한편, 서울시는 이와는 별도로 지난해 12월 서울시 내 설치된 보도상영업시설물에 대해 구조 및 디자인 변경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음.

▣ **보도상영업시설물 전수조사 실시 (재난안전관리실 도로관리과)**

- 점검기간 : '23. 12. 6.(수) ~ 12.15.(금)
- 점검대상 : 25개 자치구 보도상영업시설물 1,391개('23. 10월 말 기준)
- 점검내용 : 시설물 외관 상태 및 디자인 변경 여부
※ 자연 변색, 단순 홍보물 부착 수준의 변경 제외
- 점검방법
 - 시·자치구 합동점검 : 7개 자치구 시설물 밀집지역
※ 종로구, 중구, 광진구, 동대문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남구

- 4) **제9조(행위의 금지)** ① 운영자는 점용허가 및 시설물 대부로 인한 권리나 의무를 제3자에게 전매, 전대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임의로 점용허가 장소를 변경할 수 없다.
② 운영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운영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시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설물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③ 운영자는 시설물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시장은 운영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1. 허가된 점용장소 또는 면적 이외의 도로 등에 상품 및 그 밖의 물건을 쌓아 두거나 판매하는 행위
 2. 시설물 외벽에 상품 등을 과다 진열한 후 시설물 외부에서 영업을 하는 행위
 3.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일시적으로 폐점하는 이외에 15일 이상 시설물을 폐점하는 행위. 다만, 사전승인이 불가능한 경우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후승인을 받을 수 있다.
 4. 시설물을 운영자와 운영자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 중 1명 이외의 타인에게 운영하게 하는 행위
 5. 가로판매대에서 금지되는 행위
 - 가. 의약품 및 화공약품 등을 취급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 나. 음란·퇴폐를 조장하는 서적 등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
 - 다. 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행위. 다만, 전기조리기구를 이용하여 보온을 요하는 핫도그, 햄버거, 샌드위치, 건포(乾脯)류 및 김밥의 판매행위에 한정하여 시장의 사전 승인이 있는 경우 판매를 허용함.
 - 라.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
 6. 구두수선대에서 금지되는 행위
 - 가. 구두를 닦거나 수선하는 행위 또는 열쇠를 수리·가공하는 행위 이외에 다른 물품을 취급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 나.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점검결과

- 12개 자치구 129개 시설물 외관 변경

점검대상	점검결과			
	계	색상 및 디자인 변경	구조변경	낙서
1,391	129	104	9	16

- 색상 및 디자인 변경 : 104건



- 시설물 증축 등 구조변경 : 9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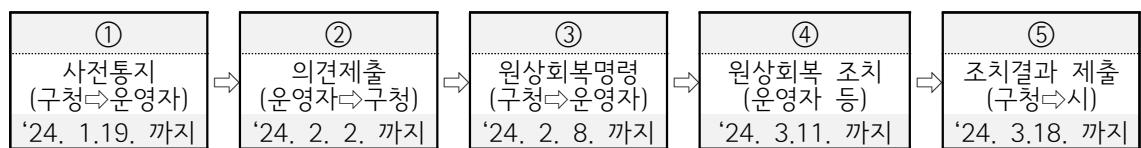


- 시설물 외관 낙서 : 16건



○ 조치계획

- 구조 및 외관변경 시설물에 대해 원상회복 조치



- 원상회복명령 미이행시 도로점용허가 취소 및 대부계약 해지
- 필요시 원상회복명령과 별도로 벌점(30점) 부과 조치

○ 이는 서울의 공공환경을 개선하고 시설물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 및 안전을 증진하고자 시가 '가로판매대의 표준형 디자인'

(2007년)'을 마련하여 이를 일관적으로 적용토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가로판매대 표준형 디자인 매뉴얼 (2007) (디자인정책관)

구 분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유 형	2종 (A, B형)	2종 (표준형, 소형)
규 격	A형: 2800(W)×1400(D)×2600(H) B형: 2800(W)×1400(D)×2700(H)	표준형: 2800(W)×1600(D)×2100(H) 소형: 2500(W)×1400(D)×1800(H)
외관재질	스텐레스 스틸에 분체도장	스텐레스 스틸에 분체도장
외관색상	기와진회색	기와진회색



가로판매대(A형)



가로판매대(B형)



구두수선대(표준형)



구두수선대(소형)

- 운영자가 시장의 승인없이 시설물의 색상, 디자인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낙서 등으로 외관을 훼손한 여부를 점검한 것으로,
- 총 129건의 규정위반 행위가 적발되어 구조 및 외관변경 시설물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이 통지되었으며 일부 시설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변상금을 부과(2건)하거나 점용허가를 취소(2건) 조치할 계획임.

■ 개정안에 대한 의견

- 먼저, 안 제2조제7호는 보도상영업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시장의 사무를 현행 제15조에서 시설물이 위치하는 지역의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음에 따라 구청장을 ‘관리자’로 보다 명확히 정의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음.
- 다음으로, 안 제9조제2항은 운영자 뿐만 아니라 관리자인 자치구청장도 시장의 승인없이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운영자 및 관리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시설물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 관리자인 구청장이 관할하는 지역의 시설물에 대해 임의로 구조 및 외관 디자인을 변경하거나 구청장이 변경에 관한 사항을 승인할 경우 이를 금지할 근거가 없어 서울시 내 시설물의 통일성과 심미성을 저해할 수 있는바,
- 관리자인 구청장으로 하여금 시장의 승인없이 시설물의 구조변경 및 훼손을 금지토록 하고 변경·훼손한 경우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보여지며
- 이는 서울시 공공시설인 보도상영업시설물의 기능을 확보하고 이용의 편리성과 미관 향상을 위해 서울시가 시 전역의 시설물에 표준형 디자인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는 만큼 적절한 조치라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전원 찬성)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도호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708
----------	------

발의년월일: 2024년 04월 03일

발의자: 송도호 의원(1명)

찬성자: 강동길, 김경, 김성준,
김인제, 박강산, 박수빈,
박승진, 박칠성, 봉양순,
서준오, 성흠제, 송재혁,
아이수루, 왕정순, 우형찬
, 유정희, 이민옥, 이소라,
이승미, 이원형, 임규호,
임만균, 임종국, 전병주,
최기찬, 최재란, 한신
의원(27명)

1. 제안이유

- 보도상영업시설물의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은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무를 자치구에 위임하여 자치구청장으로 하여금 관리토록 하고 있으며, 운영자가 시장의 승인없이 구조변경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관리자인 자치구가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이를 보완함으로써 자치구의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을 도모 코자 함.

2. 주요내용

- 관리자에 대한 용어 정의를 추가로 신설함(안 제2조제7호)
- 관리자가 시장의 승인없이 구조변경 또는 훼손한 경우에도 시장은 시설물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추가함(안 제9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타 : 신 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관리자”란 제15조에 따라 시장이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을 말한다.

제9조제2항 중 “운영자는”을 “운영자 및 관리자는”으로, “운영자가”를 “운영자 및 관리자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 략) <u><신 설></u>	제2조(정의) ----- -----. 1. ~ 6. (현행과 같음) 7. “관리자”란 제15조에 따라 시장이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을 말한다.
7. (생 략)	8. (현행 제7호와 같음)
제9조(행위의 금지) ① (생 략) ② <u>운영자는</u> 시장의 승인없이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u>운영자가</u> 이를 위반한 경우 시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설물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제9조(행위의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u>운영자 및 관리자는</u> ----- ----- <u>운영자 및 관리자가</u> ----- ----- -----. ③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조(정의)제7호에 관리자에 대한 용어 정의를 추가로 신설하고, 제9조(행위의 금지)제2항에 관리자가 시장의 승인 없이 구조변경 또는 훼손한 경우에도 시장은 시설물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추가함에 따라 서울시의 재정 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당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이정수
추계분석관	김지혜

☎ 02-2180-7953
e-mail : kjh0123@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